

## 1 추진 개요

### □ 추진 절차

구분	내용	비고
기업 참여 신청	실습기업: 운영계획서 서면(이메일 또는 원본) 제출 - 표준·자율 실습 유형별 계획서 서식에 유의 - 실습생 선발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선발 일정 고려하여 신청 학교: 계획서 검토 및 협의 후 개신누리 등록	11. 23.(목)까지
참여학생 선발	① 기업별 선발 방식에 따라 직접 선발 또는 학과 추천 선발 ② 실습 시작 3일 전까지 최종 선발 완료 후 센터에 통보 ③ 선발 완료 이후 실습학생 개신누리 등록	1. 5.(금)까지
수강 신청 및 상해보험 가입	선발학생에 한해 학과 요청 접수 후 센터에서 수강신청 및 해당 사업단 별 현장실습 안전공제 가입	실습 시작 3일 전까지 요청
사전 교육	실습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	별도 안내
산재보험 가입	실습기업에서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(실습 시작 후 1주일 이내, <a href="mailto:intern@cbnu.ac.kr">intern@cbnu.ac.kr</a> 로 제출)	기업→학교
협약 체결	실습기업·실습학생·대학 3자간 협약 체결	
현장실습 실시	'23. 12. 26 ~ '24. 2. 29. 중 실제 출근일 기준 20일 이상 운영	
수행 점검	학생 및 기업 실습현황 점검(대면·비대면 병행 운영)	
실습 종료	실습 종료 및 실습기업 담당자의 평가서 작성·제출	

### □ 운영 개요

- 실습기간: 2023. 12. 26. ~ 2024. 2. 29. 중 20일 이상
  - ※ 졸업예정자: 1. 24.(수)까지 실습 종료 및 성적 처리, 서류 제출 완료
- 기업 참여신청: 2023. 11. 23.(목)까지
- 실습 유형: 표준 현장실습학기제
- 실습 장소: 실습 참여기업 내
- 모집 인원: 실습 기관(업) 수요에 따름
- 운영 형태: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 기준으로 운영
  - ※ 단, 실습 특성상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자율 현장실습에 한하여 운영

## ○ 실습 유형 별 교과목 운영

실습 유형	교과목	운영 기준		실습지원금 (월 단위/24년 기준)	인정 학점
		직무교육	실습시간		
표준 현장실습	인턴십Ⅱ	25% 이하	75% 초과	1,545,555원 이상	일반선택 3학점
	인턴십Ⅲ				일반선택 6학점
	학과 개설 인턴십 교과목*				학과별상이

## 2 참여 대상

○ 실습학생: 2023년도 동기 계절학기 우리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

○ 실습기관

-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·기업 등 학생의 실무교육·실습이 가능한 기관
-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 관련 업무를 부여
- 학생의 교육·지도 및 관리를 전담할 교육담당자 배치
- 현장실습생 대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(미가입시 현장실습 불인정)

### 불인정 기준

- ①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,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·선발하는 경우
- ②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(조기취업 포함), 근로, 인턴,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,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
- ③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(일경험 수련생 포함)
- ④ 4대보험 체납, 노사분규 및 상습 임금체불 등으로 실습이 불가능한 사업장
- ⑤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,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
  - 소비, 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 및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
  - 계절적,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
  -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산학협력단(단 **별도 사업자등록번호**를 사용하는 센터, 연구소 등은 가능)

## 3 세부 운영방법

### □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접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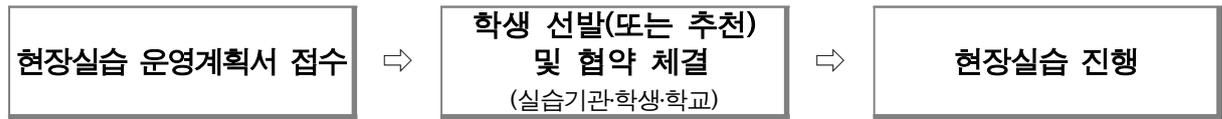
○ 참여 수요조사 및 운영계획서 접수

- 실습기관별 운영계획서 접수 및 협의를 통한 운영계획 확정
- 운영계획 확정 후 개신누리 업로드

○ 실습기관에 대한 사전 점검

- 신규 실습기관에 대하여 운영 전 서면 또는 현장점검 실시

## ○ 진행 절차



## □ 학생 보호

○ 사전교육 실시: 현장실습 시작 전 안전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

○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

- 상해보험: 참여 확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상해보험 가입
- 산재보험: 실습기업에서 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 \* 미가입 시 불인정
  - 실습 시작 후 1주일 이내에 기업에서 학교로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
  - 발급 방법: 고용-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내 “증명원 신청/발급-고용 산재보험 사업자취득명부신청”에서 사업자 번호 기입

※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일괄적용이 되는 경우 (건설)현장별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

### 산재보험

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」 개정안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69호)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(擬制)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대상

-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
- 다만,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·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서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(擬制)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 부여
-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및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

## □ 현장실습학기제 운영

○ 운영 기간 및 시간

-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5일 동안 연속적으로 운영
-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이거나,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
- 단 자율 현장실습에 한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센터와 사전 협의

○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배정

-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(실습 수행계획, 안전, 보안 등), 수행 과정 및 결과 점검, 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배정하여야 함(운영계획서에 명시)

구분	표준 현장실습학기제	자율 현장실습학기제
직무 관련 교육시간	10% ~ 25%	25% 초과

※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기업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지원비 결정

○ 실습지원비

-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(교육부 고시 제2022-1호)에 의거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
- 주 또는 월 단위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및 직무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산출

○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

교과목 구분	실습지원비			
	주 단위 지급 금액		월 단위 지급 금액	
	최저	최대	최저	최대
표준 현장실습 (인턴십, 학과개설과목)	354,960원 이상		1,545,555원 이상	

· 지급 단위(주 또는 월)는 실습기업의 임금 지급 방식에 따름

산출 방법

- 주 단위 실습시간 수: 일 실습시간 수 × 주 실습일수 +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
- 주 단위 실습지원비: 시간급 최저임금액×주 단위 실습시간 수×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) 이상
- 월 단위 실습시간 수: (주 단위 실습시간 수 ÷ 7)×(365 ÷ 12)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
- 월 단위 실습지원비: 시간급 최저임금액×월 단위 실습시간 수×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) 이상

<산출 예시(2024 기준)>

1일 8시간, 주5일, 교육시간 25%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/ 24년 최저임금 9,860원 기준

- 주 단위로 지급 할 경우 실습시간 수 및 실습지원비 = 48시간/ 354,960원 이상
  - (일 실습시간 수 × 주 실습일수 +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)
    - ⇒ (8시간 × 5일 + 8시간) = 48시간
  - (주 단위 실습시간 ×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×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)
    - ⇒ 48시간 × 0.75 × 9,860원 = 354,960원/주
- 월 단위로 지급 할 경우 실습시간 수 및 실습지원비 = 209시간/ 1,545,555원 이상
  - (주 단위 실습시간 수 ÷ 7) × (365 ÷ 12)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
    - ⇒ [(8 × 5 + 8) ÷ 7] × (365 ÷ 12) = 208.57 ≈ 209시간
  - (월 단위 실습시간 ×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×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)
    - ⇒ 209시간 × 0.75 × 9,860원 = 1,545,555원/월

(참고)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

제22조(실습지원비)

-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, 현물(식사, 기숙사, 통근 버스 등)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,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.

제25조(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)

-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제22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한다.

※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○ 실습 중 학생 지도 및 점검

- 현장실습 지도 담당자(지도교수)는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학생의 현장 교육 현황 등을 청취하고, 현장실습 보고서의 작성 지도 및 점검, 출근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지도 실시(실습기간 중 1회 이상)

구분	방문 지도	비대면 지도
기준	▶ 실습기간 중 1회 이상 실습기관을 방문	▶ 실습기관 소재지가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이거나 해당 기관에서 전염이 우려되어 비대면 지도를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 ▶ 화상채팅, SNS(카카오톡 등)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지도학생의 현장 교육현황 등을 확인 및 지도
증빙서류	▶ 개신누리 보고서 작성 공통: 출장신청서, 방문 사진 (얼굴 확인 가능)	▶ 개신누리 보고서 작성 화상채팅 캡처화면 또는 지도교수와 실습학생 간 주고받은 이메일의 사본 등 비대면으로 지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

- 참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서면 중간점검 실시
- 신규 실습기관 중 운영 전 서면점검만 실시한 경우 현장점검 실시

○ 학생평가 및 학점부여

-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이 종료되는 시점에 실습학생의 수행능력·수행태도 및 출결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에 제출
-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제출사항에 대해 검토 후 평가(P/F)

□ 학교 지원사항(LINC 3.0 및 국립대학육성사업)

○ 실습기관

- 학생 실습지원비를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(100%)\*으로 지급하는 경우, 실습 종료 후 신청 절차에 따라 실습기관에 최저임금의 25%금액 지원 가능 \*2024년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: 2,060,740원

○ 실습학생: 상해보험 가입 및 실습 유형에 따른 학점 부여(별도 지원금 없음)

○ 참고사항

- 단 상위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위 사항은 LINC 3.0, 국립대학육성사업만 해당이며 그 외 타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 자체 규정에 따름

□ 코로나19 대응

○ 행정 조치

-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, 실습 참여학

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즉시 실습을 중단하며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름

-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조정됨에 따라 실습기관의 별도 방침이 있는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
- 기타 세부사항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 지자체용」에 따름

○ 재택 현장실습

-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류 제출을 통해 해당 학기 전체 실습기간의 25%기간에 한정하여 실시
- 단, 실습기간의 25% 이상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실습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 여권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, ②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 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, ③ 학생·실습기관·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

○ 확진 시 출석 관리: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감시 해제일까지 공결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인정함

※ 「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(공결승인)」적용

※ 단 코로나 19 발생 상황에 변동이 발생하여 정부 방역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서 별도 운영대책 수립

□ 제출 서류

제출자	서류목록	
실습기관	실습 전	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, 사전 서면점검서(신규기업 해당)
	실습 중	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(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→증명원신청/발급→고용산재보험 사업자취득명부신청에서 사업자번호 기입 후 발급)
	실습 후	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, 설문조사
실습학생	실습 전	현장실습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자기소개서(개신누리 작성) 성폭력 예방 온라인교육 수료증( <a href="http://gecc.chungbuk.ac.kr">http://gecc.chungbuk.ac.kr</a> )
	실습 중	현장실습주간보고서(일별 150자 이상) 및 현장실습종합보고서 현장실습 운영 중간점검서(실습기간 중 배포예정)
	실습 후	설문조사, 통장내역(기업 입금내역), 현장실습 참여수기
현장실습지도교수	실습 후	방문지도보고서(출장명령서 및 사진첨부)

## □ 주의사항

(실습기관) 현장실습생 대상 **산재보험 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**

(실습학생)

- 센터 및 각 학과(부)개설 인턴십 교과목 최대 18학점까지 이수 가능
- 3자간 현장실습협약서 제출 필수 \*미제출시 평가대상 제외  
(사전 제출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센터에서 정한 기간 내 제출)
- 타 학과 개설 인턴십 교과목 중 **동일 교과목명**의 인턴십은 학점 불인정  
(예: 화학공학과 인턴십 I = 현장실습지원센터 인턴십 I)
- 실습 중 실습시간과 중복된 계절학기 수업 및 프로그램 참여 불가
- 타 국고 및 대학 예산 지원과는 중복 지원 불가

(지도교수)

- 방문 지도 실시(대면 및 비대면 지도 병행 운영)